

–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
특별회계 분야 종합감사 결과 공개



연 수 구
감 사 실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9. 12. 2 ~ 12. 13.(10일간)
- 감사범위 : 2017. 9. 1. ~ 2019. 10. 31.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4명
- 중점 감사부분
 -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예산운용의 적정성
 - 특별회계 예산 집행의 적정성
 - 지출,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입) 처리실태
 - 공사·용역 관리 및 감독, 하도급 관리 등
 - 사업추진의 부적절한 관행 및 예산낭비 요인 점검
 - 기타 특별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조치계획

- 총 지적 건수 -- 총 13건 처분
 - 행정상 조치 -- 13건 (시정요구 8건, 주의요구 5건)
 - 재정상 조치 -- 2건 (919,420원 회수)
 - 신분상 조치 -- 1명 (훈계)

II

지적사항

제목	1. 일반회계 전출금 미조치 및 특별회계 전입금 미징수
위법 부당 내용	인천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 전출금 항목으로 편성 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처리 하여야하나 미징수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토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2.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 미준수
위법 부당 내용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무관이 아닌 분임재무관의 결재를 받고 계약업무를 처리
처분 요구 사항	지방회계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규칙(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 및 주의 요구” 조치
제목	3. 계약의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공사·용역 및 물품계약의 설계변경 시 변경계약에 따른 원인행위 정정을 하지않고 여러건을 함께 모아서 그 차액만을 원인행위 정정처리하거나, 원인행위 정정에 대한 (분임)재무관의 결재를 받지 않고 처리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의 설계변경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4. 공사 준공정산에 따른 계약변경 미시행
위법 부당 내용	감독공무원이 준공 정산보고를 마친 공사계약을 준공 정산한 부분(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계약변경(감액)을 하지 않고 공사대가를 지급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요구” 조치 및 관련자 훈계 처분

제목	5. 공사 및 물품구입 검사확인 등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공사 및 물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고, 물품 매입 시 물품 검사(수)조서 미작성, 검수 확인 누락,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검사 조서 미작성, 물품 대금 지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사실 미확인, 물품 구입 시 인지세 미납부,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시 검수 확인 누락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라 준공(납품) 확인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 준공 검사 이행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지않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입인지를 제출받도록 “시정요구” 조치
제목	6. 공사 하자처리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하자담보기간 설정 시 준공검사일이 아닌 준공일 및 기타의 날짜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초일을 기산한 사실이 있음. 하자보증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기하자검사(연2회) 및 만료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3천만원 초과하는 공사계약건의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관리부 미관리.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에 따라 하자 검사 실시 및 하자보증각서 제출받도록 “시정요구” 조치
제목	7. 일상감사 미시행
위법 부당 내용	2차에 걸쳐 용역사업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해당됨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시행
처분 요구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8. 세출예산 집행과목 운영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사무관리비 지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급여관리사 상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사무 관리비로 지출
처분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지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요구” 조치
제목	9.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 부당 내용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자의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임에도 일할계산하지 않고 여비 지급, 근거리 (왕복 2km 이내) 출장자에게 여비 지급 및 관용 차량 사용자에게 감액 없이 여비 지급
처분 요구 사항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에 대해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조치